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21 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 박용갑・박정현・김영호

염태영 • 복기왕 • 황정아

소병훈 · 장종태 · 문진석

조승래 • 문대림 • 정동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.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, 합계출산율은 2006년 1.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.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.

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, 종교문화행사지원,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, 그린스마트스쿨 조성,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.

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·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,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

제18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6122호),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0호),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4호) 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인구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인구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인구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③ 인구인지 결산서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,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(이하 "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"라 한다)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, 그밖에 인구인지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제4 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결산서의 첨부서류) ① 제	제17조(결산서의 첨부서류) ① -
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	
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의2.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
	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
5. ~ 12. (생 략)	5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인구인지 결산서의 작
	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
	<u>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</u>
	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
	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
	<u>향상,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을</u>
	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
	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
	보고서(이하"인구인지 결산서"
	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	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
	인구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
	<u>한다.</u>
	③ 인구인지 결산서는 인구 증

감 및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,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(이하 "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"라 한다)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인구인지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